

「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11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60호

## 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 참여위원회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시민행복참여위원회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‘노조위원장과 미래기획부장’을 ‘노조부위원장과 미래 기획부장 및 해당업무 부서장’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서장이 주관하여 공사의 해당 사업별로 분과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박 인 희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호 선 (390-7644)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(생략)	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<u>노조위원장</u> 과 <u>미래기획부장</u> 으로 한다. 위촉위원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 중에 사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 ----- <u>노조부위원</u> <u>장과 미래기획부장 및 해당</u> <u>업무 부서장</u> ----- ----- -----.
③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</u>	③ <u>위원장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서장이 주관하여 공사의 해당 사업별로 분과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.</u>
④ <신설>	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